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나207975, 2019나207982(반소),
2019나551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준석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H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5. 13.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13007(본 소),
2018가단97029(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반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체결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640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6. 25. 별지2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C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체결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46,651,8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금 중

46,651,826원을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담보목적 기재 각 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인도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절곡기(9T×3,000L, J, 이하 ‘이 사건 절곡기’라 한다)를 뺀 별지3 목록 기재 각 동산으로 감축하고, 원상회복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한 뒤, 일부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양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640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6. 25. 별지2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번호 2 K 프레스 수량 1대(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항소취지는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C 사이에 별지1 담보목록 기재 각 동산 중, 2017. 3. 2. NCT 편칭기(50T, M)에 관하여, 2017. 9. 20. 톱기계(600A, N) 및 이 사건 절곡기에 관하여 각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C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L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1. C과,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C에 대한 파주시 E 소재 공장 건물에 관한 차임채권을 정산하여 C이 원고에게 총 7억 8,861만 원을 변제하고, 기계장치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에 별지1 담보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C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3.경부터 C에 철강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2017. 11. 30. 기준 미수금 84,238,242원이 남아 있었고, 2018. 10. 24. 기준 미수금 잔액은 46,651,826원이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8차전6403호), 2018. 3. 28. 법원으로부터 47,651,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6. 25. 동산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별지2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집행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사건).

바. 원고와 L도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환가)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 피고, L의 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경매가 같이 진행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 G, P 사건). 이에 따라 2020. 1. 9. 별지4 경매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일괄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8,500만 원에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사. 그런데 위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집행관이 위 매각대금을 공탁하여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의 결과를 보기위해 배당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아. 한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피고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7986호), 법원은 2019. 11. 28. 이 사건 절곡기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원고만 항소를 제기한 항소심은 Q이 500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절곡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본안전항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물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으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본소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1)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615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각 참조). 그러나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압류물과 관련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 1) 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6. 1. 18.경 R(S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보인다)으로부터 2,8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프레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는 C과 동일한 ‘파주시 T’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소는 그 옆인 ‘파주시 U’인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인 사실 및 원고가 위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프레스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C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소는 다르고, 이 사건 프레스는 C의 사업장 소재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른 유체동산압류조서(갑 제6호증)에는 C의 대표이사 V가 이 사건 압류물이 압류될 당시 제3자, 즉 원고에게 양도담보공증이 되어 있다고 이의제기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V가 독립당사자참가자나 이 사건 프레스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③ 이 사건 약정서(갑 제13호증)에는 C이 변제해야할 금액인 7억 8,861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정산금액은 2개동보증금, 프레스대금, 사무집기비용은 제외된 금액임’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위 ‘프레스대금’의 ‘프레스’는 이 사건 프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R으로부터 이 사건 프레스를 매수한 후 C에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C에 이 사건 프레스를 임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
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참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는 별지1 담보목록 기재 각 동산 중 Q 소유의 이 사건 절곡기와
이 사건 프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물 중
이 사건 절곡기와 이 사건 프레스 제외한 나머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이 사건 압류물 중 이 사건 절곡기와 이 사건 프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도 취소채권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 채무자인 C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본소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그 취소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특성과 모순판결의 회피 및 소송경제의 원칙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반소로서 본소와 같이 심리, 판단되는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제1심판결 제5쪽 4번째 줄부터 제7쪽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11번째 줄 각 “이 사건 각 동산”을 각 “별지1 담보목록 기재 동산”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19번째 줄 “4) 따라서”부터 같은 쪽 마지막 줄까지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배당절차는 배당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아 배당표 또한 작성,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취소만으로도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해 별지3 목록 기재 각 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다.

4. 결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의 반소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반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

별지1 담보목록

(유)		생산설비 보유현황			
NO	제조 설비명	규격	수량	제 작 사	비 고
1	유압 프레스	400Ton	1		
2	유압 프레스 선형금형	1000*500	1		
		1000*1000	1		볼트조임식
		1000*1500	1		
		1000*500	1		윤접식
		1000*1000	1		
		1000*500	1		AL 자켓
		1000*1000	1		
3	절 단 기	4.5T*2500L	1		
		9.0T*3000L	1		
4	절 곡 기	9.0T*3000L	1		
		4.5T*4000L	1		
5	아크 용접기	10 K	4		
		5 K			
6	TIG 용접기	300 A	4		
7	CO2 용접기	350 A	4		
8	PE 용접기	TWINNY S	2		자동 용접기
		TRIAC 5T			수동 용접기
9	파워 프레스	45T	1		
		75T	1		
		120T	1		
10	NCT 편심기	50T	1		
		30T	1		
11	롤 기 계	320A	1		
		600A	1		
12	포 입 기		1		
13	PE 로보트		1		
14	PE 로보트 금형	1000*500	1		
		1000*1000	1		
		1000*1500	1		
15	덕트 기계		3		
16	우레탄 발포기		2		
17	우레탄 발포기 금형	1000*500	1		
		1000*1000	1		25T 일체형
		1000*1500	1		
		1000*500	1		
		1000*1000	1		25T 불성형
		1000*1500	1		
17	공프레사		3		
18	지게차	4.5T	1		
			1		

별지2 압류목록

번호	압류물	수량
1	절단기()	1(대)
2	프레스	1(대)
3	절단기(, 9Tx3000L)	1(대)
4	절곡기 (, 9Tx3000L)	1(대)
5	절곡기 (, 4.5Tx4000L)	1(대)
6	120T 프레스	1(대)
7	30T NCT세트	1(조)
8	50T NCT세트	1(조)
9	400T 유압프레스	1(대)

별지3 목록2)

		(유)	생산설비 보유현황		
NO	제조 설비명	규격	수량	제 작 사	비 고
1	유압 프레스	400Ton	1		
2	유압 프레스 성형금형	1000*500	1		볼트조임식
		1000*1000	1		
		1000*1500	1		
		1000*500	1		용접식
		1000*1000	1		
		1000*500	1		AL 자켓
		1000*1000	1		
3	절 단 기	4.5T*2500L	1		
		9.0T*3000L	1		
4	절 곡 기	4.5T*4000L	1		
5	아크 용접기	10 K	4		
		5 K			
6	TIG 용접기	300 A	4		
7	CO2 용접기	350 A	4		
8	PE 용접기	TWINNY S	2		자동 용접기
		TRIAC ST			수동 용접기
9	파워 프레스	45T	1		
		75T	1		
		120T	1		
10	NCT 편심기	50T	1		
		30T	1		
11	통 기 계	320A	1		
		600A	1		
12	포 밀 기		1		
13	PE 로보트		1		
14	PE 로보트 금형	1000*500	1		
		1000*1000	1		
		1000*1500	1		
15	박트 기계		3		
16	우레탄 발포기		2		
17	우레탄 발포기 금형	1000*500	1		25T 일체형
		1000*1000	1		
		1000*1500	1		
		1000*500	1		25T 불성형
		1000*1000	1		
		1000*1500	1		
17	공프레사		3		
18	지게차	4.5T	1		
			1		

2) 별지1 담보목록에서 절곡기(9.0T × 3,000L, J)가 삭제되었다.

별지4 경매목록

번호	경매물품	규격	수량	평가액	매각가격	경락인	비고	변경
1	400T 유압프레스		1대	40,000,000				
2	절단기()	10HP	1대	12,000,000				
3	절단기() .9Tx3000L		1대	30,000,000				
4	절곡기() .4.5Tx4000L		1대	15,000,000				
5	50T SCT세브		1조	25,000,000				
6	30T SCT세브		1조	15,000,000				
7	유압프레스(금형)		7조	2,800,000				
8	아크용접기		1대	500,000				
9	TIG용접기()	300A	2대	1,000,000				
10	CO2용접기()	350A	2대	2,000,000				
11	파워프레스(45T)		1대	4,000,000				
12	파워프레스(75T)		1대	7,000,000				
13	파워프레스(120T)		1대	10,000,000				
14	틀기계()		1대	3,000,000				
15	틀기계()		1대	4,000,000				
16	로임기()		1대	8,000,000				
17	PE로보브()		1대	5,000,000				
번호	경매물품	규격	수량	평가액	매각가격	경락인	비고	변경
18	PE로보브금형		3조	400,000				
19	타트기계()		3대	2,000,000				
20	우레탄알로기		1대	2,000,000				
21	우레탄알로기금형		4조	2,000,000				
22	공프레사		2대	2,000,000				
	【합계금액】			192,700,000				

1)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만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하여도 유효한 본안전항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같이 본다.